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, 우수건설기술인 제도의 세부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우수사업자 및 기술인을 체계적으로 발굴·육성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전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5조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)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.

1.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: 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종합평가”라 한다)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종합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

2. 우수건설사업자: 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
가.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

나.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 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

다.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
라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

3. 우수건설기술인: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

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자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) <u>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(이하 “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”이라 한다)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(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)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</u>	제45조(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) <u>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,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선정한다.</u>
1. <u>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</u>	1. <u>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: 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종합평가”라 한다)</u>

2. <u>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 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</u> 3. <u>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</u>	<u>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를 종합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</u> 2. <u>우수건설사업자: 평가 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</u> <u>가.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</u> <u>나.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 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</u> <u>다.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을 유지하였을 것</u> <u>라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3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 말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</u> 3. <u>우수건설기술인: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인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선정기준을 충족하</u>
---	--

4. <u>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</u>	<u>는 자</u> <u><삭 제></u>
--	--